

# 2005년도 9급공채 문제해설

## [문01] 형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4]

- ① 형벌과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징역형을 먼저 집행한다.
- ②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한다.
- ③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병과된 때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 ④ 자격정지와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자격정지보다 보호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 ㉠ 사회보호법 제20조 (감호의 판결 등)

- ④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한다.

### ㉡ 사회보호법 제23조 (집행순서 및 방법)

- ① 보호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보호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자격정지는 보호감호와 같이 집행한다.
- ②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 ③ 수개의 보호감호판결이 있는 때에는 후에 선고받은 감호만을 집행한다.

## [문02] 행형법상 징벌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3]

- ① 3개월 이내의 금치
- ② 3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 ③ 작업상여금의 전부삭감
- ④ 2개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제한

### ㉠ 행형법 제46조(징벌)

- ②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1월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3. 2월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 2월이내의 금치

## [문03]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것은?[3]

- ① 보호자감호위탁
- ② 단기보호관찰
- ③ 치료감호집행
- ④ 소년원송치

###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 ①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 ② 제1항제1호 처분과 제2호 및 제3호의 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소년부는 소년의 인도와 동시에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탁자 또는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문04]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

- ① 구속영장의 집행은 받은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구외작업과 도급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신청작업 대상자는 금고와 구류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이다.
- ③ 교도작업은 성질에 따라 일반작업과 신청작업으로 구별된다.
- ④ 직영작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교도작업의 종류			
구분	내용		
수형자의 법적 성질에 따른 분류	일반작업	징역수형자에게 과하는 작업으로 형벌로 과해진 정역을 말한다	
	신청작업	금고수형자, 구류수형자, 미결수용자 중에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수용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교도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화목적과 심신의 건강을 위하여 청원작업을 허가	
작업의 목적에 따른 분류	생산작업	행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마련하고 수형자에게 작업을 보도하려는 목적에 따라 시장성이 있는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에 종사하도록 하는 작업	
	관용작업	피수용자의 수용 및 시설의 유지, 관리 등 교도소 자체의 기능유지를 위해 행해지는 내부작업으로 세입증대와는 무관하고 세출예산의 절감에 기여하며, <u>민간압박이 가장 적은 작업(1999년 8급승진)</u>	
	직업훈련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기능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으로 공공직업훈련(양성훈련, 향상훈련-중급기술/고급기술/정예훈련)과 일반직업훈련(고급기능훈련, 기타훈련)으로 구분	
경영방식에 따른 분류	직영(관사)작업 (교도소에서 일체의 시설, 재료 및 경비 등을 부담하여 자재를 생산 판매)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형벌집행의 통일과 작업통제 용이</li> <li>② 경제변동에 따른 불시 손해없고 국고수입 증대, 자급자족 가능</li> <li>③ 취업자 작업적성에 적합하게 부과</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민간기업의 활동에 압박 요인*</li> <li>② 신제품개발이나 시장개척 등 경제경쟁에서 불리</li> <li>③ 제품의 질이 떨어질 염려 농후</li> </ul>
	위탁(단가)작업 (외부 민간기업체로부터 작업에 사용할 기계, 설비 등을 제공받아 물건을 생산 교부)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인의 간섭이 적어 행형의 통일성을 유지</li> <li>② 불경기가 문제되지 않고 민간기업의 압박이 비교적 적음</li> <li>③ 취업비 부족으로 인한 작업중단 방지</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시적인 작업으로 교도작업의 목적인 직업훈련 곤란</li> <li>② 경제적 이윤이 적음</li> <li>③ 부당경쟁의 사례가 발생 가능</li> </ul>
	노무(임대)작업 (계약에 의하여 노무만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작업방식)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취업비가 필요없고 자본이 없어도 가능</li> <li>② 제품의 처리에 문제 없음</li> <li>③ 경기변동여부와 무관하여 손실이 적음</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인의 간섭이 많아 교정상의 통일이 곤란</li> <li>② 취업자의 직업훈련에 부적당, 수형자의 교화목적 외면우려</li> <li>③ 외부와의 부정이 개입될 염려</li> </ul>
	도급작업 (어떤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공사의 결과에 따라 약정금액을 지급받는 작업)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작업의 대형성으로 많은 수입</li> <li>② 불취업수형자를 대폭 해소</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구외작업으로 계호 곤란</li> <li>② 손실의 대형화 예상, 실패할 경우 보상방법 곤란</li> <li>③ 전문기술자의 확보가 곤란하여 실현성이 희박</li> </ul>
	구외작업	주로 교정시설에서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외부통근작업이 대표적이다. 최근 교정의 개방화 추세에 비추어 중간처우방법으로 활용. 미결수용자는 구외작업에 취업시킬 수 없다.	

\* 위탁작업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법무부장관의 승인) 재계약시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얻어 갱신할 수 있다.

**[문05] 자유형 단일화 반대논거가 아닌 것은?[4]**

- ① 노동이 형벌과 함께 강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노동의 형벌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형의 종류가 다양 할수록 책임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는 그만큼 더 실현될 수 있다.
- ③ 과실범과 같은 수형자를 다른 고의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
- ④ 자유형의 세분화는 교정실무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 자유형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논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배종대 형사정책 320쪽)**

- ① 교정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 ② 징역과 구금의 구별기준인 파렴치성은 또 다른 낙인을 찍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③ 노동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의무이자 권리로 본다면 징역과 금고를 구별해야 할 근거가 없다.
- ④ 수형자의 약 70%가 작업에 종사하므로 자유형의 분류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 ⑤ 행형의 개별화는 처우의 개별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노역의 유무가 아니다.

**㉡ 자유형의 단일화를 반대하는 논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노동이 형벌과 함께 강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노동의 형벌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형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책임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는 그만큼 더 실현될 수 있다.
- ③ 과실범과 같은 수형자를 다른 고의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

**[문06] 현행법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3]**

- ① 벌금미납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다.
- ② 단기자유형의 하한선은 1개월이다
- ③ 구류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이다.
- ④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정역의 부과 여부에 있다.

㉠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 **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미만으로 할 수 있다.

㉢ **형법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미만으로 한다.

㉣ **형법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이상 5만원미만으로 한다.

㉤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 **형법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년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0일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문07] 다음 중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4]**

- ① 사회복귀에 용이하고 정기형의 엄격성을 보완한다.
- ②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누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자에게 적용된다.
- ④ 가석방으로 출소한 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 형법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②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석방제도는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는 동시에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자발적 사회복귀동기를 북돋아 주는 기능을 한다. 이 제도의 직접동기는 정기형제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부수적 효과로 정기자유형을 상대적 부정기형으로 만드는 역할도 있다. 후자의 기능으로 정기형제도의 경직성이 완화되는 형사정책적 의미가 있다.







**[문18] 다음은 교도작업에 대한 내용이다. 현행 교도작업의 규정이 아닌 것은?[4]**

- ①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 ② 외부통근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고, 외부통근작업의 종류는 소장이 정한다.
- ③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 및 1일의 작업과정을 정하여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매주 1회 수형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여야 한다.

**☞ 행정법 제35조 (작업)**

- ①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 ②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기업체등에 통근작업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행정법시행령 제116조 (작업의 종류와 직업훈련)**

- 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장래의 생계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행정법시행령 제117조 (작업의 고지)**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 및 1일의작업과정을 정하여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행정법시행령 제122조 (작업성적의 검사)**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수형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문19] 계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

- ① 휴대폰 검사, 거실 및 작업장 검사는 대물계호이다.
- ② 검찰청 및 법원의 소환에 응하는 것은 호송계호이다.
- ③ 신체검사, 의류검사 등 법익의 침해가 크지 않는 것은 통상계호이다.
- ④ 특별계호란 계호대상자의 특수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계호의 종류		
계호대상에 따른 구분	대인계호	신체검사, 계구 및 무기사용, 호송 등과 같이 수용자 및 제3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과 같은 인적계호
	대물계호	대물적 계호는 차입물품의 검사, 소지품검사, 공장검사 등과 같이 수용자 및 제3자에 속한 것에 대한 물적계호
계호수단에 따른 구분	인적계호	계호직원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에 의한 계호
	물적계호	교도소의 시설물이나 계구, 무기 기타 제반설비에 의한 계호
계호장소에 따른 구분	호송계호	외부로 이동하는 경우에 행해지는 계호
	출정계호	사법기관의 소환에 응하기 위한 경우에 행해지는 계호
사태의 긴급성에 따른 분류	통상계호	자체검사, 공장과 사방검사, 감시감독 등과 같이 실력강제로 법익의 침해가 별로 없는 경우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필요없는 계호
	비상계호	평상시보다 강력한 신체적 구속을 요구하는 법익의 침해가 강한 계호로 긴박한 상황 아래에서 법률상의 근거를 요구하는 계호
특별계호		특별한 재소자 - 사형선고자, 도주우려자, 자살우려자, 정신이상자 등에 대한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금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지는 계호

**[문20] 책임점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

- ① 기준점수는 초범과 누범에 상관없이 개선급별에 따라 산정된다.
- ② 소득점수는 아일랜드제와 같은 月단위로 산정된다.
- ③ 신입수형자는 4급에 편입된다.
- ④ 계급의 진급은 소득점수를 통해 책임점수를 모두 소각한 때에 행한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2조 (편입 및 진급순서)**

신입수형자는 제4급에 편입하고 행형성적에 따라 단계별로 상위계급으로 진급시킨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3조 (책임점수)**

① 각 계급의 책임점수는 집행할 형기를 월로 환산하여 이에 다음 각호의 1의 범수 및 개선급별에 따른 점수를 곱하여 얻은 수로 한다. 이 경우 집행할 형기를 월로 환산함에 있어서 월의 단수는 이를 버린다.

1. 초범자인 경우 : A급 2점, B급 3점, C급 4점

2. 2범이상인 자의 경우 : A급 2.5점, B급 3.5점, C급 4.5점

② 책임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부정기형은 단기를,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유기 징역형 또는 금고형은 20년을 그 형기로 한다.

③ 수형자에 대하여 2이상의 유기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병합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책임점수를 산정한다.

④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소멸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책임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책임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⑤ 제39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소멸하여 제4급에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책임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제3급 또는 제2급에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9조 (진급)**

① 계급의 진급은 매월의 소득점수로 책임점수를 모두 공제한 때에 행한다. 이 경우 책임점수를 공제하고 소득점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계급의 소득점수로 인정한다. 다만, 개선급의 변경에 의하여 진급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진급이 결정된 때에는 그 달 1일에 진급한 것으로 본다.

③ 진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